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
2019. 12. 5(목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
(안전건설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(안)

1. 개 관

이 기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,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.

2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[단위 : 천원]

2019년도 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운용계획			2020년도 말 조성액(A+B)
	수 입	지 출	증 감 (B)	
1,098,343	159,000	117,200	41,800	1,140,143

○ 수입계획안

- 증지수입 50,000천원
- 공공예금 이자수입 19,000천원
- 과징금 및 과태료 90,000천원

○ 지출계획안

- 사무관리비 50,700천원
- 시설비 66,500천원

3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안은

「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수료,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요 재원이며

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0억 9,834만 3천원임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

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,000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,900만원, 이행강제금 3,000만원, 과태료 6,000만원으로 총 1억 5,900만원이며,

지출내역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설치비 5,000만원,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6,650만원으로, 총 1억 1,720만원입니다.

-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6.> [전문개정 2011.3.29.] [제목개정 2016.1.6.]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29.>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7.12.29.>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<개정 2017.12.29.>
2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<개정 2013.8.9.>
3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<개정 2013.8.9.>
4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<개정 2013.8.9.>

5.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, 잡수입 등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<개정 2017.12.29.>
 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 <개정 2017.12.29.>
 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<개정 2017.12.29.>
 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17.12.29.>
 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[중전 제4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 6. 간판 디자인 및 제작·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[중전 제5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 7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[중전 제6호에서 이동 <2017.12.29.>]
-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